

정정보적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없는 편집인에게도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Cello 고등법원 1987. 8. 5 판결
-13U 140/87-사건

적용법조

Nidersachsen 주 언론법 제 11 조 4 항

판결요지

책임편집인은 그 출판사의 내부규정에 의하면, 정정보도문의 게재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할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그에 대하여 정정보도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사실개요

원고는, 피고가 어느 지방신문의 간행요목(Impressum)에 편집국장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근거로 하여, 그에게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청구하였다. 그러자 피고는 그가 책임편집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 청구를 거절하였다. 즉 피고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에게는 정정보도문의 게재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없고, 이러한 권한은 수석편집인에게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가처분신청인(장차의 원고)은 가처분피신청인(장차의 피고)에 대하여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요청하였다.

「S」신문의 1987년 2월 15일자에는, 『절망적인 망명신청자들은 인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열망하고 있다』라는 제목으로, 원고가 경영하고 있는, 「R」시에 소재한 망명신청인들을 위한 주거문제를 다루는 기사를 게재하였다. 위 신문은 간행요목에는 피고가 편집국장으로서 기재되어 있었다. 위와 같은 기능하에서 피고는, 위 신문의 주요한 편집상의 기고에 대하여 편집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즉 피고는 그 신문의 기고에 관하여 그 공표의 범위와 종류를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단지 정정보도문의 게재에 관하여 이를 공표할 권한은 수석편집인인 W 박사에게 귀속되어 있었다.

원고는 1987년 2월 20일자 편지와 함께 피고에게 정정보도문의 문안을 전달하면서 그 게재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1987년 3월 9일자 소송대리인의 편지를 보내면서 위 요청을 거절하였다.

원고는 위 가처분의 신청을 하면서 그 근거로서, 피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위 정정보도문 게재청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피고의 여타의 나머지 권한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정정보도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7가지의 문제점들에 관련된 정정보도문은 그 내용에 있어서도 적절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판결이유

원고는 Niedersachsen 주 언론법 제 11 조 4 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가 원하는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1. 지방법원의 견해와는 반대로, 피고는 책임편집인이고, 따라서 위 니더작센주 언론법 제 11 조 4 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에 대하여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지방법원에 있어서의 구두변론 기일에 그의 소송대리인이 진술한, 피고 스스로의 설명에 의하여라도, 피고는, 정정보도문의 게재 여부에 관한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예외만을 제외하고는 「S」 신문의 지방란에 대하여는 책임편집인이다. 피고는 책임편집인의 개념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정의만을 반복하여 진술하고 있을 뿐, 그에 관한 사실들을 명백하게 진술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는, 피고의 책임영역에 속하는 지방란에 실릴 기사에 대하여는 편집을 하고, 그 경우 필요에 따라서는 형사상 처벌받을 내용이 있는지를 검토하며,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기사의 공표를 중지시킬 수도 있다고 하는 원고의 주장사실에 언급하면서, 위와 같은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은 관계에서 피고는 그 지방란에 관한 한 그가 책임편집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피고는 원고의 사실상의 주장에 대하여 자백한 것으로 되는 것이다.

위에서 본 바에 의하여, 피고는, 통설인 지위설 (Löffler, Presserecht, Band 2, Rd.-Nr.35 zu §9 LPG m. w. N)에 의하여 책임편집인으로 인정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것 이다. 위 통설의 견해에 의한다면, 책임편집이라 함은, 발행인에 의하여 그 지위가 부여되고, 따라서, 어떤 기사가 공표되어야 할 것인지 또는 그 내용 때문에(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상 처벌받을 내용 때문에) 그 제재를 거부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하는 것이다. (Löffler, a.a.O, Seitz/schmidt/Schöner, Der Gegendarstellungsanspruch, Rd.-Nr. 68 참조). 그런데 피고 자신의 자백에 의하여 피고에게 위와 같은 권한이 귀속되어 있음이 분명하게 되었기 때문에 피고는 책임편집인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하여 니더작센주 언론법 제 11 조 4 항의 규정에 따른 법률적인 효과로서 그의 책임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책임을 발생시키는 사정은, 정정보도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피고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책임편집인이 어떤 기사의 공표에 앞서서, 형사상 및 언론법상의 관점에서 그 기사를 사전에 검토하였었다는 사실에 있는 것이다(Löffer, a.a.O, Rd.-Nr. 49, 62; a. A.OLG Köln, NJW 69. 755 참조). 따라서 정정보도문의 형식적 및 내용적인 요건만 구비되어있으면, 편집인에게는, 정정보도문 게재의 문제와 관련하여 본래의 의미에 있어서의 결정권은 더이상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피고는 Niedersachsen 주 언론법 제 11 조 4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정정보도문의 게재의무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고용계약에 의하여 피고에게 과하여진 그의 권한상의 제약은 단지 내부적인 관계에 있어서만 그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위에서 본 바에 의한다면, 통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당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견해이지만), 책임편집인이 출판사의 내부관계에서 정정보도문의 게재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편집의 직무를 포기하여야 할 것이다(Löffler a.a.O., Rd.-Nr. 76 zu §11 참조). 위와 같은 점으로부터 정정보도문의게재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는지의 여부는 책임편집인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결정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에게는 처음부터 위와 같은 권한이 부여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은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즉, 위와 같은 권한의 제한이 처음부터 존재하였는지 또는 그 고용계약의 계속 중에 위 해당 편집인에게 그러한 제한이 가해지게 되었는지는 중요하지 아니한 것이다. 만약 위와 같은 제한이 처음부터 존재한 것이 아니었다면, 앞서 본 원칙에 따른다면, 피고는 그의 직책을 위와 같은 형태로 인수하지 않았어야 했을 것이었다.

바로 이 사건의 경우가, 책임편집인의 권한의 분산이 실무상의 어려움이나 참을 수 없는 결과로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즉 어떤 기사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는, 정정보도문, 게재의 요청을 누구에 대하여 하여야 할 것인가에 관하여 커다란 불안함을 야기시켜 주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 사건의 경우에는 책임편집인이라고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인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위 수석편집인이라는 사람은, 그에게만 부여되어 있는 정정보도문의 게재여부를 결정할 권한에 관련하여 보면, 책임편집인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즉 책임편집인이 되기 위한 요건으로서는, 해당 편집인이 책임편집인의 기능을 사실상 수행하고 있을 것이 요구되는 것이다(Löffler, a.a.O., Rd.-Nr. 36 zu §9 LPG). 즉 수석편집인 W 박사가 S 신문의 지방란 기사에 관하여서는, 형사상 및 언론법상의 관점에서 이를 검토하고, 편집하고,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그 공표를 거절할 수도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피고는 스스로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2. 원고가 게재를 요청하고 있는 정정보도문은 그 형식적 및 내용적인 면에 있어서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